

산업단지 공급가격 인하방안

2008. 5. 23

▶ 목 차 ◀

- I. 추진 배경 / 1
- II. 분양가 상승 원인분석 / 2
- III. 분양가 인하방안 / 4
- IV. 산업단지 공급방식 개선(임대산단 확대) / 13
- V. 기대 효과 / 16
- VI. 실행 계획 / 17

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
국토해양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

I. 추진 배경

▶ 1차회의시 제기사항 ◀

- 「단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?», 「평균단가를 어떻게 저렴하게 할 것인가?», 중요한 두가지 문제임. 평당 30~50만원이 될 수 있는 방안 연구 필요.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, 임대단지를 많이 만들 수 있어야 함(대통령님)
- 입지확보가 우선적 문제, 토지공사 등에서 미리 땅을 확보해 놓고 신청 들어오면 절차로 들어가는 방안 검토 필요(강원도지사님)
- 중소기업을 위한 임대전용 산업단지, 미니 산업단지 확대방안도 검토필요 (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,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)

□ '00년대 이후 산업단지 분양가 급등, 기업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

- '05~'09 기간중 분양(분양예정포함)된 산단 평균가는 약 78만원/3.3㎡ 수준으로 '90년대 후반보다 약 1.8배 상승

* 분양가추이(전국, 만원) : (90초) 35 → (90후) 43(23%) → (00초) 52(21%) → (00후) 78(51%)

- 높은 산업용지 가격은 기업 투자활성화 및 경쟁력 저하의 주요인

- 국내 산업용지 분양가는 중국·말레이시아(30년 사용료 기준)보다 5~10배 비싼 수준

< 국내외 산업용지 분양가 비교(만원/3.3㎡) >

한국	일본	대만	싱가폴	중국	말레이시아
37~140	85~400	40~140	40~180	10~25	4~10

* 중국,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는 장기임대시 토지사용료(30년) 기준

- 기업은 고지가를 공장 신·증설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인식

* 제조업 건축시 장애요인('05.7, 대한상의) : 고지가 29.2%, 부담금 25.7%, 건축규제 18.8%

II. 분양가 상승 원인분석

□ 산업단지 분양가는 “사업비”와 “산단 분양면적”에 의해 결정

※ 분양가 = 사업비 / 산단 분양면적

- (예시) 사업비 6,000억원, 100만평 규모(공공용지 40%)의 산단 분양가
⇒ 1백만원 = 6,000억원 / 60만평(산단 분양면적<공공용지 제외>)

○ 사업비는 용지비 · 조성비 · 자본비용 · 간접비로 구성

* 비중 : 용지비(40~60%), 조성비(20~30%), 자본비용(10~15%), 간접비(5%이하)

○ 산업단지 분양면적은 전체 면적에서 도로·녹지 등 무상으로 공급되는 공공시설용지(평균 40% 수준)를 제외하고 결정

□ 지난 10년간 사업비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용지비 상승

○ '97~'07 기간중 용지비 상승률은 14.1%로 같은 기간중 분양가 상승률 8.3%의 1.7배 수준

- 그 결과,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용지비 비중이 '90년대 후반 29% 수준에서 현재 48%(수도권은 60% 수준)로 급증

《 산업단지 분양가 항목별 추이 》

(천원/3.3m²)

항 목	'95~'99		'00~'04		'05~'09		연평균 증가율 ('97~'07)
	비율	비율	비율	비율			
① 용 지 비	79	29%	124	35%	296	48%	14.1%
② 조 성 비	119	43%	145	41%	204	34%	5.5%
③ 자 본 비 용	63	23%	54	15%	84	14%	2.9%
④ 간 접 비	13	5%	33	9%	27	4%	7.6%
총 계	275	100%	356	100%	611	100%	8.3%

* 원가파악이 가능한 토지공사 시행 산단 대상 (19개소)

○ 용지비 급증은 전반적인 지가상승과 보상단가 상승이 주된 요인

▪ (지가상승) '97~'07 기간중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은 8.0% 수준

* 같은 기간중 용지비 상승률 : 14.1%

▪ (보상단가 상승) 용지보상 과정에서 산단 지정에 따른 개발 기대심리 반영으로 공시지가 이상으로 보상단가 상승

* (예시) 오송생명산단 : 보상과정에서 개발이익 반영 등으로 보상비 1.7배 증가 (당초 공시지가 577억원 → 최종 보상가 960억원)

⇒ 개발 확정 이전에 저렴하게 산단용지를 확보·비축 필요

□ 산단 분양면적이 지속 축소된 점도 분양가 상승의 일부 요인

* 분양면적 비율(184개 산단 평균) : ('85) 75% → ('95) 72% → ('05) 65%

① '90년대 이후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로 녹지비율 지속 증가

* 녹지비율(184개 산단 평균) : ('85) 7.0% → ('95) 10.8% → ('05) 13.6%

▪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,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법정 비율 이상의 녹지율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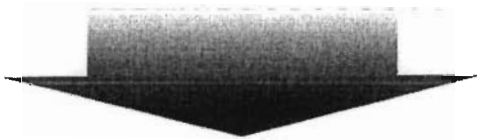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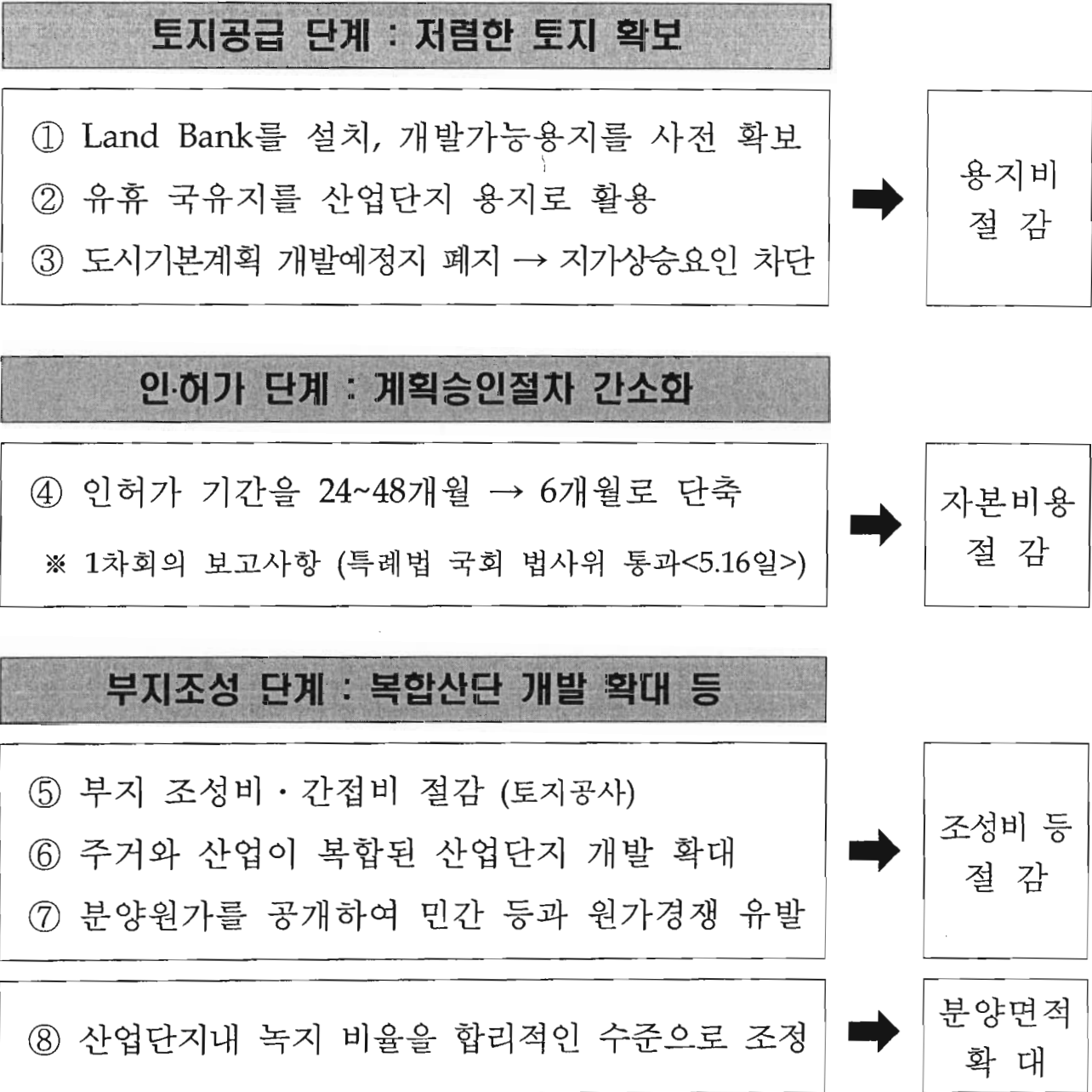
* (예시) 부천 오정산단 녹지율 : 15.1% (법정비율 : 5~7.5%)

② 산단 입주업종 변화(대규모 장치산업 → 소규모 첨단업종)에 따른 입주업체 증가로 도로율도 지속 증가

* 도로비율 : ('85) 11.9% → ('95) 13.6% → ('05) 17.6%

⇒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분양면적 조정 필요

Ⅲ. 분양가 인하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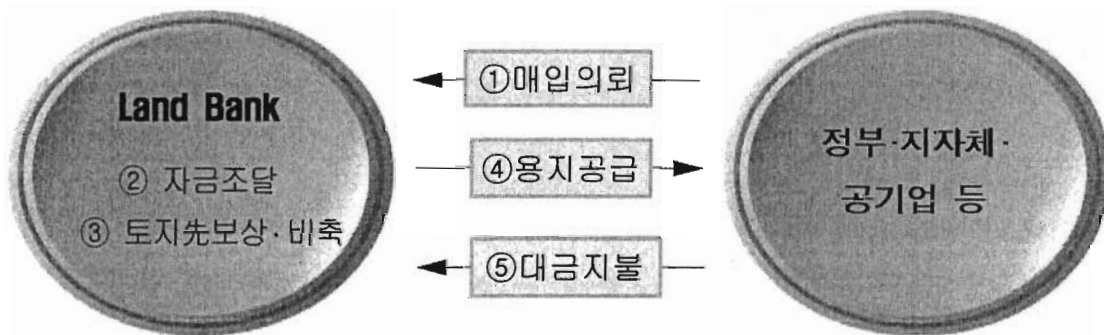


산업단지 분양가를 20~40% 수준 인하

1. Land Bank 제도 도입

1 제도 개요

- Land Bank를 설립하여 개발착수 이전에 산단용지 및 SOC용지를 비축한 뒤, 필요한 시점에 정부 또는 공기업에 공급
- 운영체계 : ① 산단용지 비축 의뢰 (정부·공기업 → Land Bank)
②·③ 자금조달 후 용지 先보상·비축 (Land Bank)
④ 산단용지 공급 (Land Bank → 정부·공기업)
⑤ 대금 지불 (정부·공기업 → Land Bank)



- 기대 효과 : 개발이익 반영전에 용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확보 가능 (최종 보상비 대비 평균 40% 수준 인하 전망)

* 평택 소사벌(천원/3.3㎡) : (1차 매입단가) 564 → (최종 단가) 1,187, 2.1배 상승
* 대전 서남부(천원/3.3㎡) : (1차 매입단가) 544 → (최종 단가) 971, 1.8배 상승

2 세부 추진방안

① (1단계) 대상토지 선정

- 연 5%이상 지가상승, 일정기간내 산단개발이 예상되는 지역*
* 개발계획 승인후 미보상된 토지, 지자체 등이 제시한 개발예정지 등
- “토지비축위원회”를 설치, 지가상승 전망·기업수요·개발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대상지역 선정

② (2단계) 토지 매입

- (지가 관리) 토지 협의매수 과정에서 지가상승 가능성 → 토지 거래허가구역 지정, 단계적 협의매수 등 지가관리를 병행
 - * 개발사업 확정 전이므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기는 곤란
- (농지소유 허용) Land Bank가 비축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, 농지소유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 (농지법 개정)
 - * 현행 농지법 :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만 농지소유 가능 (제6조)
- (세금 면제) 토지비축 취지를 고려, 취·등록세,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
- (재원 조달) 토공에 Land Bank를 설치하고(토지비축계정), 토공의 토지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 마련
 - * '09년 토지채권 운용규모 19조원 → 1조원 수준 추가하더라도 운용상 무리없음

③ (3단계) 비축·관리

- 산단 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, 비축 기간중 일반인에게 임대
- 실경작이 필요한 농지의 경우는 농촌공사에 위탁 영농

④ (4단계) 공급

- (공급대상) 정부·지자체·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한해 공급
- (공급가격) 매입원가 수준
- (임대우선) 비축토지는 우선적으로 임대산업용지로 활용
 - * 반영구적으로 낮은 수준의 임대료 유지 가능

2. 국유지 활용

1 국유지 현황 ('07년말 기준)

- 전체 국유지(16,316km²) 중 활용 가능한 토지는 잡종재산(1,331km²)
 - 행정·보존재산은 특정목적용을 위해 사용·보존 중으로 활용 곤란
 - * 행정재산(13,886km²) : 도로·하천·청사 등 행정목적용을 위해 보유·사용
 - * 보존재산(1,099km²) : 문화재 등 국가가 특정 목적용을 위해 보존

2 활용가능한 잡종재산 현황

- 잡종재산 중 1만m² 이상(산단 최소규모) 나대지는 총 168.9km²이나, 지형특성상 개발불능지*를 제외한 활용 가능지는 총 23.0km²(871개소)
 - * 표고, 경사도, 개발제한구역, 농업진흥지역, 보전임지, 군사시설보호구역 등
 - 지역별로는 영남권·호남권 등에서 높은 비중

수도권	강원권	충청권	호남권	영남권	제주권
57개소 (2.27km ²)	68개소 (2.14km ²)	145개소 (3.45km ²)	272개소 (6.45km ²)	264개소 (7.27km ²)	65개소 (1.46km ²)

- 면적별로는 1만m²~5만m² 구간에서 가장 많이 분포

	1만~5만m ²	5만~10만m ²	10만m ² 이상
도심지	15개소 (0.27km ²)	1개소 (0.05km ²)	1개소 (0.35km ²)
외곽부	788개소 (14.83km ²)	49개소 (3.98km ²)	17개소 (3.56km ²)

3 활용 원칙

- ① 국유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임대를 원칙
- ② 용지확보가 상대적으로 곤란한 중소기업에게 우선 공급
- ③ 구체적인 개발여건 및 수요 분석 후 필요한 대상지를 확정하고 산단으로 개발하기 이전까지는 Land Bank에 위탁하여 관리

4 세부 활용방안

① 5만m² 이하 소규모 국유지

- 대도시 인근·도심지 입지 :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중소기업용 임대산단으로 공급
- 외곽부 입지 : 중소기업용 미니산단(3만~5만m²)으로 조성하되, 필요시 인근 토지 추가 매입

② 5만m² 이상 중·대규모 국유지

-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임대산단으로 공급

※ 개발 착수시기는 중소기업 임대수요분석 등 종합검토 후 결정

5 국유지 활용 특례 인정

○ 국유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, 기업에 임대

- 임대방법 : 공공기관에게 관리 위탁, 위탁기관에서 임대

* 임대산단용 국유지 관리청을 재정부 → 국토부로 전환
(여건변화로 산단조성 곤란시 재정부로 반환)

- 임대기간 : 최장 50년까지
- 공장·기반시설 등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
- 임대료 : 산단 조성원가 + 관리비용 수준으로 책정

3. 지가상승요인 최소화

1 개발예정지 정보공개 제한

- 도시기본계획에 개발예정지 위치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산업단지 개발시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
 -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개발예정지별로 위치를 표시하고 있으며 산단개발시 예정지를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할 필요
 - 이를 통해 개발예정지 정보가 공개되고 막상 개발시점이 되면 이미 지가가 지나치게 상승해 있음
- 앞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기본적인 계획방향만을 제시하여
 - 개발예정지 사전공개에 의한 지가상승을 차단하고, 미개발 상태에서 저렴한 토지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

2 사업기간 단축

- 산업단지 '지정신청 → 착공'까지 장기간(2~4년)이 소요되어 그 기간동안 지가도 상승하고 사업비용에 대한 이자부담도 증가
 - 산업단지 인·허가 기간을 '2~4년 → 6개월'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지가상승, 자본비용 등 사업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
- ⇒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」에 반영·추진 (5.16일 국회 본회의 통과)

4. 복합산단개발 확대

1 현황 및 문제점

- 과거 산업단지는 대부분 굴뚝산업이 입주하여 住·商기능 혼합 곤란
 - 현재는 주력업종이 첨단산업 등으로 전환되고, 환경오염 방지시설 강화로 산단 개발방향이 住·商이 결합된 복합단지로 변화하는 추세
- 그러나, 상업용지 등 분양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산업용지에 재투자토록 하는 장치가 미비하여 개발이익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착
 - ※ 산업용지는 원가, 주거용지는 감정가, 상업용지는 경쟁입찰로 공급

2 개선방안

-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복합산업단지의 경우, 상업용지 등에서 발생한 시행자의 이익을 산업용지에 재투자토록 하여 분양가를 인하
 - 住·商 수요가 많은 대도시권에서 분양가 인하폭이 클 것으로 전망
 - 住·商 용지비율 1%p 증가 → 분양가 약 1% 인하 효과 발생
 - 산업용지와 주거·상업용지의 조성원가 구분 산정
 - 주거·상업용지에 대한 조성원가가 산업용지보다 높은 편* → 복합 개발로 조성원가 자체가 높아지지 않도록 구분 산정(통합지침 개정)
- * 통상 주거·상업용지에 대한 조성원가는 산업시설용지의 1.3배 수준

5. 조성비·간접비 절감 (토지공사)

1 조성비 절감

○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부지 조성비를 10% 수준 절감
⇒ 분양가 2~3% 인하 가능

①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현재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
1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 시행

* 확대 시행시 평균낙찰률이 80% → 68%로 하락 전망

② 계약심사제를 전면 도입하여 최적설계 도모, 정밀한 원가분석,
사업비 산정오류 방지 등을 통해 공사비 절감

* 계약심사 전담조직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사 자문단 운영

③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 산정에서 실적공사비 적용을 확대하기
위해 적용공종을 지속적으로 확대

2 간접비 절감

○ 토지공사의 산업단지 조성 관련 간접비를 25% 수준 절감
⇒ 분양가 1% 인하 가능

* 간접비 비중 추이 : ('97) 4.9% → ('07) 4.3% → (제도개선후) 3.3%

* 건설업체 간접비 : 6.5~8% 수준 (기업경영분석, 산업은행)

① 인건비 절감 : 중복 조직 통폐합, 지원인력 축소, 자연퇴직인력
및 결원 미보충 등 인력운용 효율화

② 경상비 절감 : 각종 행사 간소화, 공공요금 절약, 불요불급한
해외출장 자제 등을 통해 경상비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

6. 분양원가 공개 등

1 분양원가 공개

- 공공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용지분양시 인터넷 등을 통해 **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** (통합지침 개정)
 - * 택지조성원가는 '06.3월부터 공개중 (택지사업은 공공기관이 시행)
 - 공공시행자간(토공·지방공사) 원가비교를 통해 **경쟁적 인하 노력**
 - 민간의 자율성을 감안하여 공공시행자부터 원가공개 우선추진
- 분양원가의 검증 및 비교가 가능하도록 원가구성 항목별로 공개
 - * 원가구성항목 : 용지비, 조성비, 직접인건비, 일반관리비 등 10개 항목

2 녹지율 조정

- “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”에서 **녹지율의 상·하한선을 규정중** 이나,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**법정비율보다 높아지는 경향**
 - * (제21조) 산업단지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도 불구하고, 다음 기준에 따라 녹지 확보 가능
 - 3km²이상 산단 : 10~13%, 1~3km² 산단 : 7.5~10%, 1km²이하 산단 : 5~7.5%
- ⇒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원칙적으로 법정비율을 준수
 - 비율 초과시 지자체·국토부 등과 합동실사단 구성, 결정
- **녹지율 1%p 감소 → 분양가 약 1.5~2% 인하 효과 발생**

3 지자체의 부당한 승인조건 시정

- 지자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 밖의 도로확장, 하천정비 등 해당 산업단지와 직접 관련없는 사항을 요구하여 시행자 부담 가중
- ⇒ 산업단지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승인조건 등을 점검하고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시정 요구

IV. 산업단지 공급방식 개선

- ◆ 산업용지 분양가를 인하하더라도 해당 산업용지가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그 효과가 1회에 한정되는 한계
 - 낮은 분양가격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린 가수요 합세
 - 최초 분양시에는 저렴하였으나, 분양 즉시 시세만큼 상승
 - * 화성 발안산단에서 '03년 3.3㎡당 54만원에 분양한 공장용지 수십건이 현재 3.3㎡당 200만원에 매물로 거래 중
- ◆ 실수요자에게 지속적으로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
 - 분양가 인하와 더불어 실수요자 공급체계를 제도화하고,
 - 공공기관의 임대산업단지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
 - * 아파트의 경우,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대신 전매제한·재당첨제한 등 시행

1. 임대용지 공급 확대

1 현황 및 문제점

- 산업용지가 분양위주로 공급되어 분양가 인하효과가 최초분양자에게 전부 귀속되고 he기업이 이를 재매입하는 경우 인하효과 단절
 - 공공기관의 임대산업용지를 대폭 확대하여 기업이 적은 부담으로 입지할 수 있는 산업용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
- 임대산업용지의 경우, 수요는 약 3,300만㎡ 이상으로 분석(기업체 설문조사 등)되고 있으나, 현재 지정실적은 279만㎡에 불과
 - * '06년말 임대공장의 부지면적은 약 3,630만㎡로 매년 증가추세

2 개선방안

① (공급량) '17년까지 임대용지 3,300만㎡ 공급 (매년 평균 330만㎡)

- 현재 토공이 보유·개발중인 산업용지 1,663만㎡(산업단지·신도시·택지지구·혁신도시 등)중에서 임대수요가 있는 곳에 우선 공급하되,
- '08년에는 수요가 확인(지경부·국토부·산단공·토공 합동, 2회 조사)된 부천오정·남양주팔야·밀양사포 등 230만㎡를 공급
 - * '08.5 수요조사결과를 반영하여 '08년 하반기에 111.6만㎡를 우선공급하고, 기업체 동향 등 추가수요를 파악하여 추가공급 추진
- 수요가 집중되는 대도시권 공급을 확대하여 수급불균형 해소
 - * 임대형 단지 41개중 수도권은 3개소, 광역시는 1개소(부산시)에 불과

② (임대기간) 공급방식은 임대지만, 기업의 사용권은 내탕처럼 보장

- 임대기간을 최장 50년까지로 설정, 기업이 원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임대기간 연장

③ (임대료) 산단 조성원가 + 관리비용 수준으로 책정하되, 업종별·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요율을 차등

④ (아파트형공장 임대) 임대산업단지 사업시행자(公共)가 임대용지 일부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여 “용지+공장”을 임대 (산업입지법 개정)

- 공장건축이 필요없어 자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창업에 도움
- 임대사업자 등이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여 영세기업에게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하는 문제를 해소

2. 실수요자 공급 강화

1 현황 및 문제점

- 산업용지 분양받은 후, 공장설립 등 정상적 기업활동을 하지 않고 **전매, 분할매각** 등을 통해 **부당하게 개발이익을 사유화**하는 사례
 - * (사례) 중개업자가 시화산단 산업용지를 중소기업체 명의를 빌려 3건 각 7억여원에 분양받은 뒤 각각 9억, 10억, 13억원의 이익을 남기고 불법전매
 - ※ 산집법 규정 : 3년 이내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계약 해지, 공장설립 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前 처분시에는 관리기관에 양도
- 산업용지 임대받은 후 시장임대료를 받고 실수요자에게 재임대하는 등 임대사업을 **편법적으로 이용하여 실수요자 산업용지 활용에 애로**

2 개선방안

- 정상적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**공장설립이나 사업개시 후 3년간 전매 및 토지 분할매각 제한**
 - * 현행은 분양 후 공장설립 전까지 전매 제한
 - 기간내 처분요청시 **관리기관이 환수 또는 입찰공고**를 통해 매각
 - 양도시 가격은 당초 취득가격에 이자, 각종 비용, 공장건물가치(감정가) 등을 반영하여 중도 매각시 손실이 없도록 조치
- 산업용지 임차기업의 **재임대 혹은 분할 재임대 행위 제한**
 - * (현행) 지침으로 재임대 제한 → (개선) 산집법에 재임대 제한 규정 신설

3.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차등화

1 현황 및 문제점

- 현재 모든 산업시설용지가 입지여건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조성원가 기준에 의한 추첨방식으로 공급됨에 따라,
 - 용지위치에 따른 가치 차이 및 수요자의 선호가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

2 개선방안

-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은 조성원가 이하로 유지하되, 토지이용여건에 따라 조성원가의 $\pm 10\%$ 범위 내에서 차등화
 - * (예시) 도로연접 부지 → 조성원가 + 10%, 외곽지역 부지 → 조성원가 Δ 10%

V. 기대 효과

□ 분양가 인하 방안 실행시 약 20~40% 수준 분양가 인하 가능 전망

- 구체적 인하비율은 비축토지 활용 여부, 복합단지 개발 가능성, 녹지율 축소 정도 등에 따라 차이

□ 사례 분석

- ① 수도권 소재 A 산업단지 ⇨ 인하방안 적용시 약 22% 수준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

- (당초 분양가) 197 → (방안 적용시) 153만원/3.3m² ($\Delta 22.0\%$)

- ② 지방 소재 B 산업단지(복합산단) ⇨ 인하방안 적용시 약 39% 수준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

- (당초 분양가) 115 → (방안 적용시) 71만원/3.3m² ($\Delta 38.7\%$)

VI. 실행 계획

추진과제		관련 부처 (협조 부처)	추진일정
Land Bank 설치	Land Bank 세부운영방안 마련 (연차별 토지매입 대상, 시기 등)	국토해양부 (기획재정부)	'08. 8
	토지공사법 개정 (Land Bank 설치근거, 운영절차, 토지비축위원회 설치 등)	국토해양부 (기획재정부)	'08. 12
	농지법 개정 (농지소유 허용)	농림수산식품부	'08. 12
국유지 활용	중소기업용 임대산단 조성계획 마련	국토해양부 (지식경제부)	'08. 8
	산업입지법 개정 (임대전용산단 특례조항 보완)	국토해양부 (기획재정부)	'08. 12
지가상승요인 사전차단	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(도시기본계획 전략계획화)	국토해양부	'08. 6
복합산단 확대	산업법 시행령 개정 (복합산단 개발, 주거 및 산업용지 조성원가 별도산정)	국토해양부	'08. 12
조성비 등 이하	산단 통합지침 개정 (원가공개)	국토해양부	'08. 8
	조성비·간접비 인하	토지공사	즉시
분양면적 확대	산단 통합지침 개정 (녹지율 준수)	국토해양부, 환경부	'08. 8
실수요자 공급 강화	산집법 개정 (전매제한, 분할매각 금지 등)	지식경제부 (국토해양부)	'08. 12
임대용지 공급확대	장기임대산단 공급계획 마련	국토해양부 (지식경제부)	'08.8
	산업입지법 개정 (공장건축 임대)	국토해양부	'08.12